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회 사 무 처 소 관)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	34
2.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	35
3. 검 토 의 견	36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위원회 및 실국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합계	616,510,031	100	540,248,701	100	76,261,330	14.1
·공보관실	611,758	0.09	611,758	0.1	-	-
·감사실	121,256	0.02	121,256	0.02	-	-
·국제협력실	416,211	0.07	416,211	0.07	-	-
·기획관리실	42,634,411	6.9	39,284,189	7.3	3,350,222	8.5
·지역경제국	19,187,291	3.1	19,287,291	3.6	△ 100,000	△0.5
·내무국	111,479,071	18.1	110,682,854	20.5	796,217	0.7
·민방위국	384,218	0.06	384,218	0.07	-	-
·소방본부	20,517,520	3.3	19,055,549	3.5	1,461,971	7.7
·공무원교육원	1,486,126	0.2	1,486,126	0.3	-	-
·도민교육원	1,257,114	0.2	1,250,167	0.2	6,947	0.6
·증평출장소	29,057,412	4.7	26,399,330	4.9	2,658,082	10.1
·보사환경국	60,514,446	9.8	55,374,067	10.2	5,140,379	9.3
·보건환경연구원	1,580,244	0.3	1,850,244	0.3	-	-
·가정복지국	23,446,732	3.8	23,442,532	4.3	4,200	0.0
·농정국	118,313,438	19.2	116,980,497	21.7	1,332,941	1.1
·농촌진흥원	17,901,597	2.9	17,674,337	3.3	227,260	1.3
·건설도시국	164,465,910	26.7	103,906,544	19.2	61,369,366	59.1
·의회사무처	2,865,276	0.5	2,851,531	0.5	13,745	0.5

○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402억 4,870만 1천원보다 14.1%인 762억 6,133만원이 증액된 6,165억 1,003만 1천원임.

2.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항	세 항	사 항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		2,865,274	2,851,529	13,745
		의사관리	102,987	101,683	1,304
		기록관리	55,705	54,401	1,304
		의정활동	47,282	47,282	-
	의정활동	의정공동 운영	857,933	855,492	2,441
			857,933	855,492	2,441
	사무 운영		1,830,454	1,894,354	10,000
		기관운영	1,904,354	1,820,454	10,000
		전문위원 실운영	73,900	73,900	-

-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억 5,152만 9천원보다 0.5%인 1,374만 5천원이 증액된 28억 6,527만 4천원 규모임.
- 도 전체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156억 1,003만 1천원의 0.5%를 점하고 있음.

3. 검토의견

- 의회사무처의 금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8억 5,152만 9천원 대비 0.5%인 1,374만 5천원이 증가된 28억 6,527만 4천원임.
- 사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 기관운영으로는
 -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 1,300만원
 -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구입) △ 300만원
 - 의사운영으로는
 - 재료비 (정기의회 숙기사인부임) 130만 4천원
 - 의정활동에서는
 - 보상금(의원일비, 여비 의정활동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244만 1천원이 계상되었음.
- 증액된 예산은 인건비와 보상금등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정경비가 주된 증액요인인바 이견이 없음.